

고 발 장

사 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 발 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참여연대

피고발인 1. 윤석열 대통령
 2.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3.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4.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5.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귀중

고 발 장

사 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 발 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자 회장 조영선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74 스탠다드 빌딩 2층

담당자: 장연희 사무차장(admin@minbyun.or.kr)

2. 참여연대

대표자 공동대표 백미순, 진영중, 한상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통일동)

담당자: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jw@pspd.org)

피고발인 1. 윤석열 대통령

2.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3.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4.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5.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고발 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형법 제123조에 의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죄로 고발하오니 엄중히 수사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이유 주요 목차

1.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이유
2. 당사자 관계
3. 기초적 사실 관계
 - 가. 이 사건의 상세 경위
 - 나. 피고발인들이 해병대원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과정 개입 경위
 - 다. 관련 법령
4.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 가. 대통령실 차원의 수사 진행사항 파악
 - 1) 대통령의 최초 발표사항
 - 2)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내용 보고
 - 나.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방부 통한 수사축소·외압 지시)
 - 1) 대통령의 수사 축소·외압 지시
 - 2) 국방부장관의 수사 축소·외압 지시
 - ①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이첩보류 지시
 - ② 국방부검찰단을 통한 사건 회수 지시
 - ③ 국방부조사본부를 통한 수사결과 변개 및 재이첩 행위
 - 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수사개입의 위법성
5. 공수처에 의한 독립적 수사의 필요성
 - 가. 공수처의 수사권 발동 필요성
 - 나. 수사 촉구사항
6. 결론

고발 이유

1.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이유

2023. 7. 19. 해병대 1사단 소속 故 채수근 상병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되었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에 이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이하 ‘해병대원 사망사건’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병대원 사망사건에 대한 박정훈 수사단장 휘하의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해병대 수사단은 해병대원 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관련자 및 관련 부대를 수사하였으며, 수사결과를 최종 결재권자인 국방부 장관, 해병대사령관 등에게 보고하여 결재받은 후, 경상북도경찰청으로 이첩하였는데, 결재 이후, 국방부 장관은 ‘경찰 이첩 서류’를 전화로 지시하였고, 국방부 법무관 리관 등은 ‘관련자의 혐의사실을 삭제하라’는 등의 연락을 해병대 수사단에 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서류를 경찰로부터 법적근거 없이 회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보직해임하고 입건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발인들이 박정훈 대령에게 내린 지시가 수사 외압인 것인지에 대하여 공수처가 수사를 해 줄 것을 고발합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또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음에도 만일 그 진실을 은폐, 왜곡하려는 시도

가 있었다면 헌법위반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해병대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97일이 되는 시점에, 관계자의 증언, 증거가 인멸, 왜곡, 오염될 우려가 있기에 서둘러 이 사건 고발에 이르렀습니다.

2. 당사자 관계

고발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옹호를 위해 1988년에 설립된 법조인 단체이고, 참여연대는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위해 1994년에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피고발인 윤석열 대통령은 2022. 5. 10.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헌법 제66조 제1항),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이 있으며,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합니다(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

피고발인 조태용(국가안보실장),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국가안보실 소속으로 정부조직법 제15조 및 「국가안보실 직제」에 따라서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피고발인 이종섭은 2022. 5. 11.부터 2023. 10. 7.까지 국방부장관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국군조직법 제8조, 정부조직법 제33조),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자·감독자로서 군사경찰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조사본부를 두며(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군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검찰단

을 설치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국방부검찰단장을 지휘·감독한 사람입니다(군사법원법 제36조 제1항, 제38조).

3. 기초적 사실 관계

가. 이 사건의 상세 경위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사건의 경위를 재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7. 19. 해병대 1사단 소속 故 채○○ 해병,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하는 사건 발생
 - 해병1광역수사대, 실종·변사사건 수사 (7. 19. ~ 30.)
- 7. 20.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
- 7월 28일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 중장에게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사실상 사퇴의사 표명
해병대 수사단, 오후 2시경 유족에게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
- 7. 30. 오후 4:00경 박정훈 수사단장, 국방부장관에게 대면 수사보고, 임성근 사단장 포함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이첩 예정이라고 보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 등 배석, 장관 및 사령관 등 결제를 득함
- 7. 30. 오후 6:22경 해병대 수사단, 국가안보실에 다음날 언론브리핑 자료

제공

- 7. 31. 오전 11:00경 대통령 주재 비공개 수석비서관 회의
- 7. 31. 오전 12:00경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에게 경찰이첩 보류 지시

국방부장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구두 지시한 내용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제7쪽) ¹⁾
①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② 수사결과는 경찰에서 최종 언론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이 8. 9. 현안 보고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유가족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7. 31. 오후 12:00경 국방부장관, 오후 2시에 예정된 언론 브리핑 취소하고 차관 및 법무관리관 등에게 사건의 재검토 지시
- 7. 31. 오후경 국방부 법무관리관,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로 “혐의자를 직접 과실있는 사람으로만 한정하라” 등 요구
- 7. 31. 오후 16:00경 해병대 수사단장, 사령관에게 수사내용 변경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고
- 8. 1. 국방부차관, 해병대사령관에게 “혐의자 빼고 혐의내용 빼고 죄명 빼고, 수사라는 용어를 조사로 바꾸고 해라. 왜 해병대는 말하면 듣지 않는 것이냐” 문자 송부
- 8. 2. 오전 8:02경 해병대 수사단장, 경북경찰청에 사건인계(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공문 발송 및 수신(온나라시스템)
- 8. 2. 오전 10:30경 해병대 수사단,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 관계서류와 증거물 등 송부

1) 증 제9호증 2023. 9. 6. 연합뉴스 기사 출력물, “구속영장 직접 보니.. ‘혐의자 특정 말라’ 국방장관 지시 있었다”

- 8. 2. 오후 14:00경 해병대사령관, 해병대 수사단장(박정훈 대령)에게 보직 해임 통보
- 8. 2. 오후 19:20경 국방부검찰단, 경찰에 이첩된 사건 회수
- 8. 2. 해병대사령관, 국가안보실 2차장의 전화에 상황보고
- 8. 8.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
- 8. 8. 해병대사령부,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 의결
- 8. 14.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의 혐의를 단순 ‘항명’으로 변경
- 8. 21. 국방부조사본부, ‘해병대 사망 건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대대장 2명의 범죄혐의만 경찰에 재이첩한다고 발표
- 8. 28.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성립, 국회 국방위원회 회부
- 8. 30. 국방부검찰단, 항명 혐의 등으로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
- 9. 1. 군사법원, 구속영장청구 기각
- 9. 5. 더불어민주당, 국방부장관 등 7인 공수처에 고발
- 9. 7. 더불어민주당,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 9. 8. 공수처, 박정훈 대령 참고인 조사
- 9. 12. 국방부장관, 사의 표명
- 10. 6.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을 불구속 기소
- 10. 6. 국회 본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나. 피고발인들이 해병대원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과정 개입 경위

2023. 7. 19. 해병대 1사단 소속 故 채수근 상병이 경북 예천군 내성

천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되었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에 이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징병제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만 20세에 군에 입대한 지 4개월도 안 되는 군인의 사망에 국민 모두가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대통령실 또한 2023. 7. 20.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병대원 사망사건에 대하여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해병대 수사단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해병대 사망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2023. 7. 17. 오후 급하게 주무 부대인 7여단 외 포병 부대까지 수해 실종자 수색작전에 보냈고, 다음 날인 2023. 7. 18. 오후경 ‘사단장 전과사항’으로 제대로 된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강물에 들어가는 수중수색 지시²⁾와 함께 ‘다음 날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이 현장 방문을 할 것’이라는 전과를 반복적으로 내린’ 상태에서 2023. 7. 19. 09:05경 맨몸으로 수색작업을 하던 故 채 상병이 강물에 휩쓸려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사단장 및 관련자들의 과실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지하게 되었고, 2023. 7. 28.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임성근 사단장 등 관련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첩 예정’이라는 내용을 보고하고, 2023. 7. 30. 오전 해군참모총장에게, 같은 날 오후 국방부장관에게 같은 내용으로 보고하여 각 결재를 받았습니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박정훈 대령)은 이를 관할 경찰청에 지체없이 이첩할 예정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故 채 상병의 유가족에게 알리고, 2023. 7. 30.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3. 7. 31. 언론브리

2) 당시 지휘관들의 카카오톡 대화에 의하면 ‘눈에 확 띄는 적색티를 입고, 1열로 서서 작업하지 말고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하면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찢러보라’고 질책하였다고 합니다(2023. 8. 8. 군인권센터 [기자회견문] 해병대 故채○○ 상병 사망 사건 브리핑 - 해병1사단 지휘부, ‘무리한 수중수색 지시’ 확인).

핑을 할 계획이었습니다.³⁾

그런데 2023. 7. 31. 갑자기 언론브리핑이 취소되었고,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진술한 후 항명죄로 입건되어 현재 기소되었으며, 이미 경북경찰청에 접수되었던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서류는 군검찰단에 의해 회수되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의해 국방부조사본부는 2023. 8. 21. 해당 사건의 수사결과를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달리 축소하여 현장 지휘관인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기재한 내용으로 경찰에 재이첩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국가기능이 공정하게 행사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공개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진술에 따르면 당일 박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하자, 사령관은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주재 회의간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박 대령이 “정말 VIP가 맞습니까?”라고 묻자 김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대답했다. 이 같은 상황에 압박을 느낀 김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어떻게 할까’ 수차례 물었고, 이에 박 대령은 이날 여론 반발 등 ‘수사내용 변경 시 예견되는 문제점’을 정리해 사령관에게 보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피고발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자신이 서면 결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급히 뒤집기 위하여 긴급대책회의를

3) 2021. 9. 24.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위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는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이고, 그 시행령에 의하면 이러한 범죄는 지체없이 경찰 등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할 의무가 있습니다(아래 관련 법령 참조).

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3. 7. 31. 오후 2시 예정된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브리핑을 돌연 취소시키고, 해당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켰습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이 군사법원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예정된 대로 2023. 8. 2.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자, 국방부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을 군형법상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이미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사건을 회수하였으며, 국방부조사본부는 2023. 8. 21. 해당 사건의 수사결과를 축소하여 현장 지휘관인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기재한 내용으로 경찰에 재이첩하였습니다(증 제6호증 2023. 8. 27.자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24회’ - “채상병 수사 누가 뒤집었나? 외압과 항명”, 증 제8호증 2023. 9. 1.자 프레스인 기사 출력물 - “‘대통령 격노’ 진실은? 해병대 수사 ‘외압’ 시간순으로 살펴보기” 각 참조).

이 외압의 시작과 본질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① 피고발인들의 관심 사건으로 국가안보실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초기에는 ‘수사계획서’를, 수사 말미에는 ‘언론브리핑 자료’를 각 요구하여 미리 받아보았습니다.⁴⁾ ② 2023. 7. 31. 오전 11시경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직후에 국방부장관의 지시가 바뀌고 긴급대책회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⁵⁾ ③ 박정훈 대령은 2023. 7. 31.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에 부합하는 해병대 수사단 군사경찰들의 진술이 존재합니다. ④ 국방부검찰단의 구속영장청구서⁶⁾에 기재되어 있는 국방부장관의 지시 내용에는 ‘장관이 8. 9. 현안 보고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바, 이는 대통령실에 대한 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⑤ 김계환 사령관은

4) 증 제3호증, 2023. 8. 25.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58쪽, 제92쪽

5) 증 제4호증, 2023. 8. 30.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70쪽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

6) 증 제9호증 기사 참조

경찰 이첩이 중단된 2023. 8. 2. 오후 4시경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의 전화를 받고 상황 공유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⁷⁾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발인들의 지시에 의한 대통령실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방부장·차관, 국가안보실 2차장 및 국방비서관만 교체되었을 뿐, 그 외압의 실체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압이 부당함에 대해서 밝혔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만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항명죄로 기소되고, 보직해임되었습니다.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로 인해 의무복무 중인 군인이 사망한 데 대해서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실제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용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기능이 공정하게 행사되었는지,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 관련 법령⁸⁾

군사법원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7) 증 제3호증, 2023. 8. 25.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58쪽

8)故 이에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군에서 수사했던 사건 중에 ① 군인의 성범죄 ②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③ 군입대 전 범죄는 2022. 7. 1.부터 일반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권 자체를 이양하였습니다. 즉, 군사경찰 또는 군검사는 이러한 3대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첩하여야 하고, 당연히 이에 대하여 지휘관도 구체적인 명령을 내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9. 24.>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520호, 2022. 3. 8., 제정]

제7조(사건 이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대검찰청 또는 경찰청이 지정하는 사건 관할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관서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시행 2023. 2. 1.] [국방부훈령 제2768호, 2023. 2. 1., 일부개정]

제7조(사건 이첩)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5호서식]			
○○○ 보통경찰부/수사단(대)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수신처			
제 목 : 인지통보서			
아래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인지하였으므로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파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소 속		
	직위(직급)		
죄 명			
인지 경위			
범죄 사실			
비 고			
○○○ 보통경찰부/수사단(대)			
군검사/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 × 297mm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가. 대통령실 차원의 수사 진행사항 파악

1) 대통령의 최초 발표사항

피고발인 윤석열 대통령은 2023. 7. 20.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병대원 사망사건에 대하여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발표하였고, 군 내부에서 위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 이후 피고발인 조태용(국가안보실장), 피고발인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피고발인 임종득(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위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진행 및 기밀 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발인 김태효는 과거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임성근 사단장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고 알려지는 등 위 사건에 개입할 사적인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2)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내용 보고

이에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해병 김○○ 대령(이하 ‘김 대령’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2023. 7. 21.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해병대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해병대가 수사하는 것이 공정하겠냐는 말이 있어 국방부조사본부 등 상급부대 수사기관으

로 이첩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라고 알리면서 수사팀 편제 등이 담긴 수사 계획서를 보내달라고 하였고, 이에 해병대 수사단 제1광역수사대장이 수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안보실에 송부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김 대령은 2023. 7. 28. 해병대 수사단 중앙수사대장에게 전화를 하여 - 같은 날 해병대 수사단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수사결과 보고가 있던 것을 아는 상태에서 - 이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할 수사결과보고서를 미리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아직 수사중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이어서 국가안보실 소속 성명불상자는 2023. 7. 30. 오후 4시경 국방부장관에 대한 수사결과 보고가 있는 후 해병대사령부 정책실장을 통해 박정훈 대령에게 “국가안보실에 수사결과보고서를 보내달라” 는 요구를 전달 하였으나 역시 수사중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오후 6:20경 김 대령으로 하여금 김계환 사령관에게 “언론 브리핑 자료를 보내달라” 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하였고, 이에 김계환 사령관으로 하여금 박정훈 대령에게 지시하여 다음날 예정된 언론브리핑 자료를 국가안보실에 송부하게 하였습니다.

나.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방부 통한 수사 축소·외압 지시)

1) 대통령의 수사 축소·외압 지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故 채 상병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수

사한 결과, 2023. 7. 28. 해병대 사령관에게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보고하여 결재를 받았고, 2023. 7. 30. 오전 해군참모총장에게, 같은 날 오후 국방부장관에게 같은 내용으로 보고하여 각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 윤석열 대통령은 2023. 7. 31. 오전 11시경 대통령실 비공개 회의 자리에서 국가안보실 측으로부터 “해병대 1사단 익사사고 조사결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 예정이다” 라는 보고를 받자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장관을 연결하라고 하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고 질책을 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위 수사결과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2) 국방부장관의 수사 축소·외압 지시

①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이첩보류 지시

피고발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위와 같은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고, 2023. 7. 31. 오후 2시 예정된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브리핑과 국회 보고를 돌연 취소하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면서 신범철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재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2023. 7. 31. ~ 2023. 8. 1. 사이에 5회에 걸쳐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하여 “혐의자를 직접 과실있는 사람으로만 한정

하라. 이첩서류에 죄명, 혐의자, 혐의내용을 빼라.” 는 취지의 요구를 반복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신범철 차관은 2023. 7. 31. 및 2023. 8. 1. 김계환 사령관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해병대가 장관 지시를 이행 안 하는 것에 대하여 질책하고, 2023. 8. 1. 오후에는 김계환 사령관에게 “혐의자 빼고 혐의내용 빼고 죄명 빼고 수사라는 용어를 조사로 바꾸고 해라. 왜 해병대는 말하면 듣지 않는 것이냐” 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피고발인 윤석열, 이종섭은 공모하여 대통령의 국군통수권한 및 정부 수반으로서 행정감독 권한, 국방부장관의 군사에 관한 지휘권한을 각 남용하여 신범철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 하여금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결과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배제하는 등 수사결과를 축소·왜곡하기 위한 지시를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가 지체없이 경찰에 이첩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박정훈 대령을 포함한 해병대 군사경찰들의 수사 및 이첩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② 국방부검찰단을 통한 사건 회수 지시

해병대 수사단은 2023. 8. 2. 08:02경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건인계(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공문을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경북경찰청은 이를 수신하였습니다(증 제1호증 경북경찰청 2023. 8. 2. 사건인계(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접수문서처리이력}. 이어서 해병대 수사단 소속 군사경찰들은 같은 날 오전 10:30경 경북경찰청에 가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관계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발인 이종섭은 군사법원법상 위 사건의 회수 권한이 전혀 없는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으로 하여금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건기록 일체를 회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은 같은 날 오후 7시경 국방부검찰단 소속 수사관으로 하여금 이미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된 ‘해병대원 사망사건’에 관한 기록 일체를 다시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대통령의 국군통수 및 정부 수반으로서 행정감독 권한, 국방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국방부검찰단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각 남용하여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으로 하여금 해병대 수사단이 적법하게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기록 일체를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국방부검찰단 소속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소속 수사관으로 하여금 이미 이첩된 사건을 회수토록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와 동시에 경북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의 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③ 국방부조사본부를 통한 수사결과 변개 및 재이첩 행위

피고발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2023. 8. 9. 앞서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부당하게 회수한 ‘해병대원 사망사건’ 기록을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여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방부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박경훈으로 하여금 이미 해병대 수사단이 적법하게 이첩을 완료한 사건(즉, 경찰에 수사권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범죄 혐의 등 주요내용을 수정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국방부조사본부는 2023. 8. 21. 입장자료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기존 수사결과와 달리 당초 피혐의자 8명 중 해병대 1사단장, 7여단장, 중대장, 현장 간부 등의 ‘과실치사’ 혐의를 삭제하고 해당 사실관계만 적시하고, 초급간부(중위, 상사) 2명에 대해서는 혐의자에서 제외하며, 직접적으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이첩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대통령의 국군통수 및 정부 수반으로서 행정감독 권한과 국방부장관의 군사경찰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각 남용하여 국방부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박경훈으로 하여금 이미 경찰에 이첩되어 경찰에 수사권이 있는 사건의 수사기록상 범죄혐의 등 내용을 변경하여 경찰에 재이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국방부조사본부 소속 군사경찰로 하여금 수사권이 없는 사건기록을 변경하도록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와 동시에 경북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의 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수사개입의 위법성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을 계기로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입대전 범죄, 군 내 성폭력 사건, 군내 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은 군사경찰이 수사할 수 없고 민간경찰에 의해 수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520호, 2022. 3. 8., 제정]에 따르면, 민간경찰에 수사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군 수사단은 사건에 대해 개입하지 않고, 기초 사건 조사 후 그 사건 그대로 ‘지체없이’ 민간경찰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 국방부장관이라도 수사과정 및 수사결과를 수정하도록 하는 등 이에 관한 지시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의 특정혐의를 제외시키도록 하거나 민간경찰에 이첩된 사건을 다시 되돌리는 행위는 피고발인들이 군사법원법을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지시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첩 행위는 정당한 행위인 것입니다.

역으로, 만약 박 전 수사단장이 국방부의 외압에 굴복하고, 부당한 명령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면, 사건의 진실은 왜곡, 은폐되고 결국 어느 책임자도 처벌되지 않은 채 유야무야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법정에서, 또는 현실의 법정에서 유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5. 공수처에 의한 독립적 수사의 필요성

가. 공수처의 수사권 발동 필요성

이 사건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군사경찰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한 사안입니다. 국방부검찰단을 동원하여 그 진실을 가리는 항명죄 수사 및 기소로 인하여 군사법체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등 고위공무원과 대통령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르는 위법한 개입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독립된 수사기관의 수사는 필수적입니다. 안타까운 채 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민간 경찰에 이첩하여 그 사망 원인을 명백히 밝히려고 한 행위에 대하여, 그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도록 막은 본 사건의 책임있는 자들은 독립적인 수사기구에 의하여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를 군사법 절차나 경찰 수사에 의존하는 것은 신뢰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수사기구인 공수처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수사결과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진실을 감추려고 한 자들의 가담사실 및 경위, 범행 대가 등에 대하여 면밀히 밝혀주시고,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한 점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사 촉구사항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고 합니다) 제23조,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본 고발사건과 관련된 다른 수사기관(군검찰, 경찰 등)의 진행중인 모든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처로 이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고발 사안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등 대통령실 관계자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직권남용이자 ‘군사법농단’으로 사안의 성격이 규정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2023. 7. 31. 오전 11시 대통

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이므로, 당시 회의 자료 및 통신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통령실 모든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성역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대통령실은 국방부 장관(피고발인 이종섭), 차관(신범철), 국가안보실 2차장(피고발인 임종득) 및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순차 교체하는 등 이 사건의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한 꼬리 자르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수사 외압의 단초를 제공한 국가안보실 소속의 범행 관여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피고발인 조태용, 피고발인 김태효, 피고발인 임종득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덧붙여 국방부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및 해병대사령관 등의 집무실과 휴대전화(비화폰 포함)에 남겨진 기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북경찰청장 및 담당자가 사건 이첩 및 회수 과정에서 어떠한 외압을 받았는지 여부도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포항지청 소속 검사 2명이 이 사건이 이첩되기도 전에 경북경찰청에 9번이나 전화하여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보도되어, 이 사건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⁹⁾

6. 결론

이미 많은 증거가 인멸되거나 유실되었을 수 있으며, 왜곡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공정과 상식으로 엄히 수사하여 순직해병 수사 외압 사건의 진실을 밝혀줌으로써, 순직해병의 명예를 지키고 편안한 안식이

9) 2023. 10. 16. 오마이뉴스 [단독] 포항지청 검사 2명, '채 상병' 경찰 이첩 전에 9번 전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구성요건 해당성 등에 대해서 상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 증 방 법

- | | |
|-----------|--|
| 1. 증 제1호증 | 2023. 8. 2. 경북경찰청 사건인계(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접수문서처리이력 |
| 1. 증 제2호증 | 2023. 8. 21. 국방부조사본부 보도자료(해병대 순직사고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
| 1. 증 제3호증 | 2023. 8. 25.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
| 1. 증 제4호증 | 2023. 8. 30.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
| 1. 증 제5호증 | 2023. 8. 8. 군인권센터 [기자회견문]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브리핑 - 해병1사단 지휘부,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 확인 |
| 1. 증 제6호증 | 2023. 8. 27.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24회] 채 상병 수사, 누가 뒤집었나? 외압과 항명 -

https://playvod.imbc.com/Template/VodView?bid=1003647100230100000 |
| 1. 증 제7호증 | 2023. 8. 28. 군인권센터 [기자회견문] 故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 |
| 1. 증 제8호증 | 2023. 9. 1. 프레시안 기사 출력물 - ‘대통령 격노’ 진실은? 해병대 수사 ‘외압’ 시간순으로 살펴보기 |

1. 증 제9호증 2023. 9. 6. 연합뉴스 기사 출력물 - 구속영장 직접
 보니... “혐의자 특정 말라” 국방장관 지시 있었다
1. 증 제10호증 2023. 10. 16. 오마이뉴스 기사 출력물 - [단독] 포항지
 청 검사 2명, '채 상병' 경찰 이첩 전에 9번 전화

2023. 10. 24.

- 고 발 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자 회장 조영선
2. 참여연대
 대표자 공동대표 백미순, 진영중, 한상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귀중